



내부고발 절차

목차

1. 원칙	3
1.1 적용 범위	3
1.2 윤리위원회	3
1.3 제기된 우려 사항의 관련자 또는 대상자의 권리	4
a) 내부고발자	4
b) 제기된 우려 사항에 연루된 자	5
1.4 개인 데이터의 기밀유지 및 처리	5
2. 우려 사항의 처리 방식	7
2.1 우려 사항의 신고	7
2.2 신고된 우려 사항의 적절성 및 해당 처리 책임자로의 이첩	8
2.3 우려 사항의 취급 수준	9
2.4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한 답변	10
- 추가 조치 없음:	10
- 예비 조사:	10
- 심층 조사:	10
2.5 조사의 결론	11
2.6 내부고발자에게 프로세스 완료 통지	12
2.7 본 절차에 따라 그러한 우려 사항의 처리에 일반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언급 또는 인용된 우려 사항의 처리	12
3. 본 절차의 발효일 및 공표	13



1. 원칙

1.1 적용 범위

Virbac은 사업 활동을 수행 및 개발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윤리 규칙과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그룹의 행동강령 및 뇌물수수 방지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절차는 Virbac에 제기 및 신고된 우려 사항의 처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및 전 세계 자회사 내에서 프랑스 법률에 의거하여, 특히 2016년 12월 9일의 제2016-1691호 법률 제6~13조 및 제17조의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Virbac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 프랑스 내: 임시직 직원을 비롯한 직원 또는 외부/비정기 근로자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로서, 다음과 관련된 경우:
 - 범죄 또는 위법 행위
 - 프랑스가 정식으로 비준하거나 승인한 국제적 약속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
 - 그러한 약속을 근거로 한 국제기구의 일방적 행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
 -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¹
 - 공익을 해치는 위협 또는 심각한 손실
- 모든 프랑스 및 해외 자회사: 그룹의 행동강령, 보다 구체적으로는 뇌물수수 방지 정책에 반하는 일체의 행동 또는 상황과 관련하여 직원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자체적 내부고발 시스템

우려 사항의 처리 및 제기를 위한 이러한 시스템은 각 국가마다의 규칙에 따른 기존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예: 라인 관리 및 직원 대표 단체)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이를 보완합니다.

1.2 윤리위원회

우려 사항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 절차의 적절한 적용을 감독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윤리위원회는 본 시스템 및 절차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권한이 있습니다.

¹ 예를 들어, 괴롭힘 또는 차별은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을 구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는 제기된 다양한 우려 사항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책임자가 제출한 상황 보고에 기반하여 실행 가능한 수단과 조치를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우려 사항의 조사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신고된 해당 사례를 회사 경영진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 사항이 사실이고 우려할 만한 사건 또는 상황이 실제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위원회 구성원:

- 그룹 법무 이사
- 그룹 법무 컴플라이언스 이사(간사 역할 수행)
- 그룹 인사 이사
- 조달 담당 이사
- 그룹 재무 이사(Sapin II 법과 관련된 사안에만 관여)

윤리위원회는 제출된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를 지명하여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빈도:

- 제기된 우려 사항과 처리할 업무량에 따라 필요한 횟수만큼 진행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 절차가 적절히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최소 연 2회 이상 진행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 원칙들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며, 위원회가 임명한 모든 관계자나 우려 사항의 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 역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제기된 우려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기밀 유지
- 아래에 명시된 규칙에 따른 개인 데이터 보호
- 사건 또는 상황이 입증되기 전까지의 무죄 추정
- 제기된 우려 사항에 연루된 사람들의 방어권 보장

1.3 제기된 우려 사항의 관련자 또는 대상자의 권리

a)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는 익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제기된 우려 사항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치우침 없이 선의로 행동하는 내부고발자가 신고된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지식을 가졌을 경우, 법률에 규정된 보호, 특히 2016년 12월 9일의 제2016-1691호 법률 제6~16조에 규정된 보호 조항과 일체의 추가적 후속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기 법률은 그러한 우려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제재 또는 형사 소송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내부고발자는 추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확인되거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고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징계 조치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 이와는 달리, 신고 시스템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징계 조치와 법적 절차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b) 제기된 우려 사항에 연루된 자

신고된 내용의 증인이든, 신고된 내용을 저질렀거나 이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이든 관계없이, 제기된 우려 사항에 연루된 모든 사람은 통지를 받고, 자신의 사정을 해명하고, 본인의 주장 또는 기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체의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실이나 행동과 관련하여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에 맞게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된 우려 사항의 모든 연루자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통지를 전달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본 절차 제2조의 조항에 따라 조사 대상이 아니거나 조사 없이 종결된 우려 사항
- 예방 조치를 마련하거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제기된 우려 사항에 연루된 사람은 회사의 규칙과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자기 변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징계 조치나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고된 내용 또는 상황이 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소송에 연루된 개인 또는 집단의 방어권은 형사법 및 해당 형사 절차의 조항에 따라 행사됩니다.

1.4 개인 데이터의 기밀유지 및 처리

내부고발자 당사자, 신고 대상자, 우려할 만한 행위의 혐의자를 포함하여 신고된 내용 또는 상황에 관련된 모든 개인의 개인 데이터에는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기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신고 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에게 통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전달 사항은 플랫폼상에서 최대한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특정 프레임워크 내에서 수행된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정보 통지는 내부고발자가 신고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virbac.signalement.net>

이러한 통지는 개인 데이터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처리 시 수집 및 등록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고발자의 신원, 직위 및 연락처 정보
2. 신고 대상자이거나 신고 내용에 언급된 사람의 신원, 직위 및 연락처 정보
3. 신고 내용의 수집 또는 처리에 관여하는 사람의 신원, 직위 및 연락처 정보
4. 신고된 내용
5. 신고된 내용의 검증을 위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수집된 정보
6. 검증 작업에 대한 보고서
7. 해당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

이러한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는 신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또한 조직이 법적인 책임(특히 2016년 12월 9일의 ‘Sapin 2’ 법 상의 의무, 그리고 준법 및 자체 행동강령 준수와 같은 조직의 정당한 이해관계)을 다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담당 책임자는 사건 종결 후 2개월 이내에 (i) <https://virbac.signalement.net> 플랫폼상의 정보, (ii) 원래는 이메일로 전달되었을 사건 관련 메시지, (iii) 보관 중일 수 있는 컴퓨터 파일/서류를 익명화하게 되며(단, 사건이 징계 조치나 법적 소송 절차를 초래했고 회사가 방어 수단이나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또한 (x) 관련 이메일을 수신 또는 전송하였거나, (y) <https://virbac.signalement.net> 플랫폼 외부에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거나, (z) 사건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여 익명화가 필요한 파일을 준비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메시지와 파일을 파기하거나 익명화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내부고발 시스템에서 본인의 개인 데이터가 언급된 모든 사람, 특히 자신의 신원을 공개했거나 익명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한 내부고발자, 또는 제기된 우려 사항에 연루 또는 언급된 사람은 1978년 1월 6일에 제정되었고 2018년 12월 12일에 제2018-1125호 법률에 의해 개정되어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프랑스 데이터보호법 제48~50조의 규정에 따라 (i) 본인의 개인 데이터가 처리되었음을 즉시 통지받을 권리(상기 1.3 b)항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조항에 따라)뿐만 아니라, (ii) 자신에 관해 보유된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 및 (iii) 해당 데이터가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거나 모호하거나 오래된 경우 이에 대한 교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우려 사항의 처리 방식

2.1 우려 사항의 신고

우려 사항은 다음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 비정상적인 상황을 회사 또는 인사 부서에 알리고자 하는 직원의 직속 또는 간접 관리자
- ↳ 우려 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https://virbac.signalement.net> 인터페이스(권장되는 방법)
- ↳ legal@virbac.com 또는 human@virbac.com² 중 하나의 주소로 이메일을 전송

내부고발자는 사건의 보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우려 사항을 신고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도록 권장됩니다.

² 이 신고용 이메일 주소는 프랑스에 소재한 회사들에만 해당됩니다. 해외 법인인 경우, legal@virbac.com 이메일 주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 인터페이스(<https://virbac.signalement.net>)를 통한 익명의 내부고발 역시 가능합니다. 내부고발자에게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부여됩니다. 상기 모든 경우에서 내부고발자는 이러한 로그인 세부 정보로 추후 <https://virbac.signalement.net>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본인이 제기한 우려 사항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https://virbac.signalement.net>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었을 수 있는 질문에 답변하고, 본인의 신고 사건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요청된 익명성 보장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질 수 없다는 통지가 전달됩니다. 이는 또한 내부고발자와의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2.2 신고된 우려 사항의 적절성 및 해당 처리 책임자로의 이첩

모든 우려 사항은 [signalement.net](https://virbac.signalement.net) 플랫폼의 공식 수신인 3명(그룹 법무 이사, 그룹 법무 컴플라이언스 이사, 그룹 인사 이사)에게 전달됩니다. 수신인 중 한 명이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12월 9일의 프랑스 법률 제2016-1691호 제6조(본 절차의 1.1항에서 언급됨)에 의거하여 신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려 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신인은 위에서 명시된 본인의 책임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로서 이를 직접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건 처리 책임자에게 이첩합니다.

- 인사(프랑스) 관련 우려 사항인 경우:
 - ↳ 프랑스의 그룹 인사 이사(Francesca Cortella)
- 뇌물수수 관련 우려 사항인 경우(모든 국가):
 - ↳ 그룹 법무 컴플라이언스 이사(Zahra MOUHOUBI)
 - ↳ 그룹 법무 이사(Marie Paale PORTE)
- 보건 및 안전 리스크 관련 우려 사항인 경우(프랑스)
 - ↳ 그룹 보건안전 이사(Jérôme Patte)
- 아래 언급된 것 이외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우려 사항인 경우:
 - ↳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이 있는 그룹 부서 관리자.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룹 법무 이사(Marie Paule Porte)/그룹 법무 컴플라이언스 이사(Zahra MOUHOUBI)

제기된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는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최대 7일 이내에 공식 수신인과 내부고발자에게 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사건이 다음과 같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3 우려 사항의 취급 수준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취급 수준(아래 2.4항에 보다 자세히 기술된 대로)을 결정해야 합니다.

-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익명 신고 또는 신고된 상황과 무관한 제3자에 의한 신고:
 - ↳ 추가 조치 없음
- 입증할 증거가 있는 익명 신고 또는 신고된 상황과 무관한 제3자에 의한 신고:
 - ↳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에 의한 입증 증거 조사 및 심각성 평가
 - 최초의 자료 확인 결과 실제로 확인된 사항이 없는 경우
→ 추가 조치 없음
 - 근거 자료의 신뢰성이 확인된 경우(우려 사항의 최초 확인)
→ 예비조사
- 입증 자료가 있는 목격자 또는 지목된 피해자로부터의 신고:
 - ↳ 심층 조사
- 또한, 상기 규칙에 따라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려 사항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또는 모든 경우에서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통지한 후 심층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는 ‘추가 조치 없음’으로 분류해야 하는 우려 사항인 경우에도 신고된 내용 또는 상황의 심각성과 개연성(본인의 평가 결과)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예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2.4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한 답변

- 추가 조치 없음:

제공된 정보에서 상기 2.3항에 언급된 기준에 따라 취급할 만큼의 심각성과 부적절함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답변이 전달됩니다.

단,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는 본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특정 우려 사항을 ‘추가 조치 없음’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조사:

여기에는 내부고발자(식별된 경우), 신고 내용에서 언급 또는 인용된 사람 및 그 관리자와의 면담이 포함되며, 기존에 수집된 정보를 확인 또는 기각 및/또는 추가하고/추가하거나 면담 대상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기회가 이 면담을 통해 주어집니다.³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신고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거나, 최초 주장 이후에 제공된 추가 정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우려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추가 조치 없음.
- 신고된 상황이 확인되었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할 조치만이 미결정 상태인 경우 → 취할 조치 확인.
- 신고된 상황이 사실로 입증 또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면서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개연성 있고 심각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 심층 조사 개시.

- 심층 조사:

³ 적용 가능한 경우, 프랑스 내 관련 법률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직원 대표자의 전문 분야(건강, 괴롭힘, 차별 등)에 해당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예비 조사 과정에서 직원 대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비 조사의 진행 단계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이 보유 중일 수 있는 일체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⁴

또한, 우려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의 리소스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출입 통제 및 배지 확인
- 회계 장부 및 문서 검증
- 회사의 여러 시스템 및 툴에 남겨진 운영 기록 검증
- 감사 법인 또는 변호사 등과 같은 외부 서비스 제공자 이용

내부고발자는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검증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와 면담을 진행할 목적으로 조사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본 절차의 2.6항에 따라 통지가 전달됩니다.

2.5 조사의 결론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는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기준을 거쳐야 하며,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간주 시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개시되고 나면,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는 예비 조사인 경우에도 그동안 확인된 사실과 취급 분류에 근거하여 본인이 판단한 내용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이 내용을 살펴보고,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와 관련 당사자들(원하는 경우)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신고된 상황이나 사실의 취급 분류와 제안 또는 권고할 잠재적 조치를 결정합니다.

윤리위원회의 의견은 자문적 성격이며, 조치를 위해 다음에 전달됩니다.

- 우려할 만하고 특별히 심각한 사건 또는 상황(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회사의 경영진과 관련한 사건)이라고 윤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또는 이 점에 대하여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와 윤리위원회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Virbac의 경영 관리 부서
- 우려할 만한 사건 또는 상황이라고 윤리위원회가 판단하지만, 이러한 사건 또는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경영진 수준에서만 처리 가능한 경우, 해당 그룹의 회사 경영진

⁴ 적용 가능한 경우, 프랑스 내 관련 법률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직원 대표자의 전문 분야(건강, 괴롭힘, 차별 등)에 해당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심층 조사 과정에서 직원 대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 및 상황의 성격에 따라 관련 관리 주체는 적절한 경우 및 해당 법적 조항에 의거하여 이러한 조치에 다음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사건 및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또는 내부 절차의 개정
- 우려할 만한 행위 또는 상황의 제공자이거나 이에 가담했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고용법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 조치
- 법적 소송 절차

2.6 내부고발자에게 프로세스 완료 통지

우려 사항의 처리 책임자는 내부고발자에게 프로세스 완료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가능한 경우 관련자들의 권리와 그룹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지지 않았는지 신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답변은 <https://virbac.signalement.net> 플랫폼을 통해 제공됩니다.

2.7 본 절차에 따라 그러한 우려 사항의 처리에 일반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언급 또는 인용된 우려 사항의 처리

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신고된 행위를 제공한 개인이나 집단, 목격자 또는 기타 관련자에 해당하는 우려 사항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해당 개인이 2명의 공식 수신인 중 한 명인 경우, 나머지 공식 수신인이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 해당 개인이 불만 사항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가 임명한 필요한 권한을 가진 일체의 다른 책임자에게 이러한 불만 사항의 처리를 위임해야 합니다.
- 해당 개인이 윤리위원회 위원인 경우, 윤리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이 당사자의 증언을 제공하도록 출석 요청하지 않는 한(이 경우에는 일체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처리할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해당 개인이 우려 사항에 내려질 조치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게 되는 의사결정자인 경우, 이 결정은 보다 상급인 관리 주체(또는 Virbac 총괄 관리자가 그 대상인 경우, Virbac 이사회)에 회부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의 제공자, 증인, 피해자 또는 신고된 상황의 기타 관련자로서 지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사건 처리 단계 및 어떠한 사건 조사 조치도 해당 사건의 관련자에게 위임될 수 없습니다.

3. 본 절차의 발효일 및 공표

본 절차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절차의 모든 내용은 내부고발 절차를 다루는 각 직원 대표 기관의 자문을 거친 후 프랑스에 소재한 모든 자회사에 적용됩니다.